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08. 10. 21
제 안 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 대상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7조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할 경우는 물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면직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면직되는 경우에도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수정함.(안 제24조 제⑫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4조제12항(특별휴가)중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예정일전 3월이”
를 “퇴직을 하는 경우와 동 조례 제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면직되는 경
우에는 퇴직예정일전 3월이”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① - ⑪ (생 략) <신 설>	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① - ⑪ (생 략) 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규정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u>퇴직을 하는</u> 경우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4조(특별휴가) ① - ⑪ (생 략) ⑫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7조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u>퇴직을 하는</u> 경우와 동 조례 제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면직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